

2021년 (6/19 실시) 제27회 법무사 1차시험 상 법 분석과 총평 - 차 상 명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 구 분 | 6개년 문항 (30문제) 구성 분석 | | | | | |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상총 | 6 | 3 | 5 | 2 | 1 | 2 |
| 상행위 | 3 | 3 | 5 | 6 | 5 | 6 |
| 회사 | 12 | 15 | 10 | 14 | 14 | 13 |
| 어음·수표 | 3 | 4 | 3 | 2 | 3 | 3 |
| 보험 | 3 | 4 | 5 | 4 | 5 | 4 |
| 해상 | 3 | 1 | 2 | 2 | 2 | 2 |

2. 2021년 각 파트별 출제 영역 (총 30문제 중)

- (1) 상 총 (2문제) - 상업사용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 (2) 상 행 위 (6문제) - 상행위,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상인간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육상운송업
- (3) 회 사 (13문제) -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사의 설립, 주권,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양도의 제한, 주주총회,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주주 대표소송, 감사 및 감사위원회,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전환사채발행의 하자
- (4) 어음 · 수표 (3문제) -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어음의 보증
- (5) 보 험 (4문제)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의 해지, 손해보험, 생명보험계약
- (6) 해 상 (2문제) -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3. 총평과 시험대책

(1) 상총·상행위 파트의 높은 출제 비중과 확실히 저조한 회사법 출제의 대비

법무사 시험은 유독 **상총과 상행위** 파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반면에 회사법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상행위 파트는 각론인 운송업을 빼고는 총론에서만 5문제가 나왔고, 상사매매와 상사시효는 매년 기출 단골입니다. 특히 익명조합을 사례형으로 물어보아 참신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대비도 해야 하겠습니다.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파트가 6문제 나와 여전히 이 부분 출제비중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한편 작년 말에 다중대표소송이 개정 신설되어 종전 판례가 불허한 이중대표소송이 이번 시험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와 눈에 띄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 쉽게 맞추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어음은 난해했지만 답 찾기는 무난했고, 보험과 해상은 판례가 까다로웠습니다.

어음은 난해하지만 총론에서 대리와 원인관계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 정답 고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론의 어음보증도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어음보다 출제 비중이 높은 **보험**은 고르게 출제되나 여전히 최신판례 등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험은 특히 판례인 것 같습니다. **해상**파트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판례를 물어보았고, 선하증권 문제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섞어 까다로웠는데 정답 지문은 2016년에 기출 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3)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0개 정도로 봅니다.

익명조합의 낯선 사례와 처음 출제된 주식의 교환, 익숙치 않은 보험, 해상 판례로 문제는 까다로웠으나 상대적으로 답 찾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4) 박스형 고르기 문제, 사례문제 등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와 중요 조문과 판례숙지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문의 숙지와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해 암기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 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잘 준비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출제 비중은 작지만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만 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판례에 치중하다 자칫 조문이 뒷다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